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2016년 8월 pp.33~62
한국세무학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평성 측면을 중심으로 -

서정우**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조세지원의 방법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원에 대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헌적 연구방법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제도상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법조문 제도의 명확화는 관련 법조문의 제목을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치 모든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법 적용의 일몰 적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고 또한 법질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한시적인 법 규정은 폐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상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중소기업 개념의 정립과 지식기반산업 적용 업종의 확대 개선방안으로 최소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라도 하나의 중소기업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적용기준 확대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개정된 「중소기업법」을 준용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업종에 구별 없이 매출액규모 1,0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면제도의 단순화 개선방안에서는 먼저 일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형평성 유지에서 자금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보다 더 많은 조세지원을 하여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감세율제도의 도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안별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거나, 일반기업에서 규정한 감면제도를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일반기업에 없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일반 경감세율 적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따라서 감면제도를 단순화하여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제도상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공평성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조세특례, 조세지원, 세액공제제도

*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경제학박사, justinxu0420@hotmail.com

논문접수일 2015년 12월 26일 1차수정일 2016년 4월 14일 2차수정일 2016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12일

I. 서 론

조세는 국가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또한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세는 각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등에 따라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불평등하게 집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각 부문간 형평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조세정책의 개발을 위한 연구는 세대를 뛰어넘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가는 실시하는 수많은 조세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증세정책을 시행하거나, 혹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해 감세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일체의 조세지원제도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세정책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조세지원의 방법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원에 대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법정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세액상당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동 제도는 법정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해당 기업은 당연히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해당업체가 법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산에 의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감면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즉 법 앞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무지나 부주의로 인해, 즉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납세자는 조세를 부담하지 않고 어떤 납세자는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동 제도의 근본취지와는 크게 어긋난 불공평한 조세행정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감면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그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정부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현황을 파악한 후 정부에서 세액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혜택과 동시에 해당 세액만큼을 추산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나 아니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연구하고자 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하기 위해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조세지원의 다양한 제도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사실 기존의 조세지원에 대한 조세연구들은 주로 그 활용실태나 중소기업의 성장·고용창출과의 관계 등 주로 조세지원의 유효성 위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

물론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목적이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것에 있는 바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조세부담 공평성과 소득분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반 이론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어 제Ⅴ장에서는 중소기업특별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Ⅵ장에서는 결론과 본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였다.

Ⅱ. 선행연구

중소기업특별감면제도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극소수이며, 그것도 박은서(2011)연구와 같이 제도상 문제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중소기업특별감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적은 편으로, 이하의 선행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지원에 대한 선행연구까지 포함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1. 박은서(2012)의 연구

박은서(2012) 연구¹⁾에서는 취약계층이 기업을 창업 운영하는 경우 및 영세기업 등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하였다. 특히 118개 기업체와 144명의 세무전문가(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세감면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 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취약계층이 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일반인 중소기업보다 조세감면을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업규모가 작은 소기업은 규모가 큰 중기업보다 조세

1) 박은서(2013), 취약계층의 기업 창업 및 운영시 조세감면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지원혜택이 작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비율과 동등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 및 영세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제한의 완화 및 배제가 필요하다. 넷째, 수도권 소재 취약계층 및 영세 기업의 조세감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조세지원 규정의 단순화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조세지원 체계가 기업규모별로 지원 목적에 맞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등을 주장하고 있다.

2. 권선주(2011)의 연구

권선주(2011) 연구²⁾에서는 조세지원의 정책효과를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수익성, 성장성, 고용창출효과 측면에서 확인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 조세 혜택이 클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으로 분석되었으나 고용창출효과에는 (+)효과이지만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 연구에서는 첫째,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대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그 이용도가 부진하다. 둘째, 과세소득의 산정방법, 각종 세액감면이나 공제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주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소득세 부담의 누진성이 훼손되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혜택을 계속 향유하기 위하여 대기업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대신 기업규모의 억제, 분사,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 등 경영의사결정의 왜곡이 일어난다. 넷째, 정책목표인 경제성장, 혁신, 고용창출과 같은 성과를 가져올 기업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으로 정책대상의 목표설정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입지결정을 왜곡시켜 다른 경제적 후생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 연구는 조세지출에 의한 세수손실, 비효율적 자원배분, 공평성 훼손과 같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조세지원의 긍정적 효과가 이러한 비용들을 보상하기에 충분한지와 범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축소하고 업종 선정을 재고할 필요성, 연구개발, 고용창출 등 기능성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도 주장하였다.

3. 나희수(2009)의 연구

나희수(2009) 연구³⁾에서는 조세지원이 경영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2005년

2) 권선주(2011), 한국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정책효과와 경제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3) 나희수(201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부터 2007년까지 3개년의 법인세 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부문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세지원은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신우현(2009)의 연구

신우현(2009)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연구하여, 미국의 경우 다른 조세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연구하였다⁴⁾. 구체적으로 조세지원제도는

첫째, 소기업 주식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의 부분적 과세면제로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자산이 5천만 달러 이하의 C법인의 적격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주식을 파트너쉽, LLCs, S법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이득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투자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주식 매각손실과 통상소득을 합산하여, 중소기업투자회사에 투자한 개인은 해당회사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을 통상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셋째, 특정 소기업투자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특정 소기업투자회사의 투자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하고 있다. 즉, 개인 및 법인 납세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이익을 실현하고 판매대금을 60개월 이내에 특정 소기업투자회사의 보통주 주식 또는 파트너십지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각이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 준다. 이연 가능한 금액 한도는 개인은 3만5천 달러 (부분합산은 5만 달러), C법인은 25만 달러 정도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주식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개인이 주식발행시점에 출자자본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거래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자본손실이 아닌 정상손실로서 공제해 준다. 정상손실로 공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만 달러이다.

5. 심석무(2008)의 연구

심석무(2008) 연구⁵⁾에서는 기업특성별로 조세부담과 혜택의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일반기업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며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으며, 실무적으로 간단하면서 쉽게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신우현(2009),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심석무(200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제13권 제1호, 대한회계학회.

6. 이향구(2007)의 연구

이향구(2007) 연구⁶⁾에서는 중소기업을 규모별로 분류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선호도와 경영활동 기여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조세지원제도의 선호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기업일수록 조세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면서 복잡한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본 연구와의 차이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만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극소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제도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특히 운영상의 문제점은 국내 처음으로 연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상의 문제점 중 특히 조세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적용기준 개정의 문제, 일반기업 공제 감면과의 불공평 문제, 중소기업의 타 공제 감면 내용과의 불평등 문제, 수도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불평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III.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반론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의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열거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즉, 기업의 규모별 지역 소재지별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인 것이다.

현행 세법규정은 기업규모별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분류하고⁷⁾, 또한 지역소재지별로 수도권

6) 이향구(2007),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선호도 분석,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7) 1.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참조)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②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③ 기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내과 수도권 외로 구분하며, 특히 감면대상 업종을 구별하여 감면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연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1992년도 12월 28일에 신설되었으며, 당시에는 구(舊)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에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였다.

한편 거주자의 경우는 소득금액 5천만원이하의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40%,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20%의 감면율을 내국 법인의 경우는 1억원 이하분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40%, 1억원 초과분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20%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였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법 제목

1992년 12월 28일 「조세감면규제법」 입법당시 본 조문의 제목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었으며, 1994년 12월 22일 법 개정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하였으며, 2000년 12월 29일 개정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2년 법 규정 신설이후 1개년도 라도 법적용이 제한되거나 적용 배제된 년도가 없었는바, 구(舊) 「조세감면규제법」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질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한시성 법 규정은 폐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다음과 같다.

-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 ② ‘①’ 외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업종별 범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업종별 범위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업종별 범위

개정일	개정 내용
1992.12.28	중소제조업에 한정됨
1994.12.22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추가
1995.12.28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이 추가
2000.12.29	광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산업을 말함), 어업,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 공장,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이 추가
2001.12.29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등이 추가
2002.12.11	의료업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제작 관련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정), 공연산업(자영 예술가 제외),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 유흥음식점 외국 인전용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주문자랑표부착 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등이 추가
2005.12.31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작물재배업으로 확대 건설폐기물 처리업, 선박관리업, 분노등 관련 영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산업, 광고업, 토양정화업 등이 추가
2007.4.11	폐기물처리업에 폐기물 재활용도 포함, 분노등 관련영업은 분노수집운반업으로 개정함
2008.12.26	출판업 추가
2010.01.0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이 추가
2010.12.27	농업노동자 공급업(고용알선업에 포함)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추가
2013.01.01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2014.01.01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운영업제외) 등 추가

현재는 총 50 개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면서도 특별세액감면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는 음식점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등 3개 업종이다.

다. 감면율

(1) 일반적 감면율 적용

1992년 법 제정시에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산출세액 1억원이하는 40%, 1억원이상은 20%의 감면율을 적용하였다. 1994년부터는 40%의 감면세율을 모두 30%로 조정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모든 감면율을 20%로 조정하여 실시하였다.

(2) 중·소기업 규모에 의한 구분

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시에 대통령령으로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을 분류하였는 바, 상시 고용 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이를 소기업이라 한다.

- 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미만일 것
- ② 광업, 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미만일 것
- ③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미만일 것

한편, 2009. 2. 4. 법 개정시에는 매출액이 100억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2014. 2. 21. 법 개정시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종사자가 50명미만인 경우 소기업에 추가하였다.

(3) 지역 구분에 따른 감면율

2000. 12. 29. 법 개정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20%(도소매,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소기업은 10% 적용),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30%(도소매,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중소기업은 10%적용)를 적용하였다.

한편, 2004. 12. 31. 법 개정시에는 수도권 밖 중소기업중 도매업 등은 5%로, 기타는 15%로 감면비율을 조정하였고, 다만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15%감면 적용하였다.

(4) 도매업, 지식기반산업, 기타산업 등 영위업 구분에 따른 감면율

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시에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운수업 등(이하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기타 사업과 차등하여 감면비율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소기업의 도매업 등은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타 소기업 등은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외에서 중소기업 도매업 등의 경우는 10%를, 중소기업 기타사업의 경우는 30%의 감면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2004. 12. 31. 법 개정시 수도권 외에서 중소기업 도매업 등의 경우는 5%를 적용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중소기업 중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5%를 적용토록 감면대상을 추가하였다.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현황

법인규모별로 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과 법인규모별 연도별 공제감면세액 신고현황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⁸⁾.

<표 2> 법인규모별 연도별 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 : 개, 십억원)

		신고법인수	순이익발생법인		법인세부담액	
			법인수	당기순이익	법인수	부담세액
2013년	중소기업	421,040	321,909	162,111	237,964	6,679
	일반기업	96,765	16,066	50,512	36,166	30,074
	소 계	517,805	337,975	212,623	274,130	36,753
2012년	중소기업	389,871	265,493	49,207	223,096	7,176
	일반기업	92,703	52,498	163,342	34,846	33,161
	소 계	482,573	317,991	212,549	257,942	40,337
2011년	중소기업	369,100	255,326	48,130	212,836	6,775
	일반기업	91,514	52,615	181,272	34,883	31,186
	소 계	460,614	307,941	229,402	247,719	37,961
2010년	중소기업	350,889	242,824	44,369	202,926	6,015
	일반기업	89,134	50,451	140,635	33,816	23,566
	소 계	440,023	293,275	185,004	236,742	29,581
2009년	중소기업	334,005	227,008	37,820	195,319	6,793
	일반기업	85,415	46,134	122,467	32,420	28,060
	소 계	419,420	273,142	160,287	227,739	34,854
누 계	중소기업	1,443,865	990,651	179,526	834,177	26,759
	일반기업	358,766	201,698	607,716	135,965	115,973
	계	1,802,631	1,192,349	787,242	970,142	142,732

자료 : 2014 「국세통계연보」 8-1-2, 8-3-2, 8-3-3, 국세청.

<표 2>에 따라 2013년 기준 법인규모별 세부담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국세청 2014년 통계연보 참조.

가. 법인규모별 세부담 분석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237,964업체가 6,679십억원을 납부함으로써 업체당 28백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은 36,166업체가 30,074십억원을 납부하여 업체당 832백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업체당 평균 부담세액이 중소기업 평균의 약 30배를 이르고 있다.

〈표 3〉 법인규모별 연도별 공제감면 세액 신고현황

(단위 : 개, 십억원)

		공제감면세액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2013년	중소기업	167,823	2,149	151,589	847	33,848	1,304	141,632	625
	일반기업	5,691	7,170	425	565	9,138	6,604	—	—
	소계	173,514	9,319	152,014	1,412	42,986	7,908	141,632	625
2012년	중소기업	157,678	2,385	140,534	915	34,666	1,471	131,459	632
	일반기업	5,392	7,106	442	700	9,043	6,405	—	—
	소계	163,070	9,491	140,976	1,615	43,709	7,876	131,459	632
2011년	중소기업	150,430	2,335	133,450	888	32,765	1,446	125,046	602
	일반기업	5,284	6,996	1,373	1,033	7,586	5,964	—	—
	소계	155,714	9,331	134,823	1,921	40,351	7,410	125,046	602
2010년	중소기업	143,611	2,228	131,922	1,063	25,637	1,164	124,450	770
	일반기업	4,981	5,173	1,234	779	6,827	4,394	—	—
	소계	148,592	7,401	133,156	1,842	32,464	5,558	124,450	770
2009년	중소기업	134,158	2,180	123,285	1,181	24,485	999	116,658	846
	일반기업	4,466	4,967	1,137	819	6,101	4,149	—	—
	소계	138,624	7,148	124,422	2,000	30,586	5,148	116,658	846
누계	중소기업	585,877	9,128	529,191	4,047	117,553	5,080	497,613	2,850
	일반기업	20,123	24,242	4,186	5,331	29,557	20,912		
	누계	606,000	33,370	533,377	7,378	147,110	25,992	497,613	2,850

자료 : 2014 「국세통계연보」 8-1-2, 8-3-2, 8-3-3, 국세청.

<표 3>에 따라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나. 법인규모별 세액 감면 분석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151,589개 법인이 8,470억원을 세액 감면받아 업체당 약5.6백만원의 세액 감면을⁹⁾ 받은 반면 일반기업은 425개 업체가 5,650억원의 세액 감면을 받음으로서 업체당 1,329백만원의 세액 감면을 받고 있다. 이는 일반기업의 평균 감면세액이 중소기업 평균 감면세액의 약 237배이다.

다. 법인규모별 세액 공제 분석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33,848업체가 1조3,040억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 업체당 평균 38백만원이며, 반면 일반기업은 9,138업체가 6조6,040억원의 공제를 받아 업체당 평균 722백만원이다. 일반기업의 평균 공제세액이 중소기업 평균의 약 19배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업체당 세 부담은 30배이며,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포함할 경우는 업체당 평균 237배를 감면받고, 세액공제에 있어서도 업체당 평균 19배에 이른다.

이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액공제감면이 중소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열악한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제도상 문제점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문 제목의 적정성 문제와 법적용의 일몰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문 제목의 적정성 문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조문 제목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라고 규정되었다. 이는 일단 중소기업이면 모두 해당조항의 감면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인즉 모든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업종과 그리고 그 업종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내외유무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된다. 실제로는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되지도 않는데 마치 모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9) 이중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에 해당하는 감면신고내용은 업체수가 141,632업체이고, 세액은 625십억원으로 업체당 4.4백만원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법 제목을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감면임을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마치 모든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납세자들과 글로벌 경제시대에 관련 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제목을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적용요건을 다시 정하여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본다.

나. 법적용의 일물성 문제

정부는 1992년 구(舊)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신설이후 1994년 12월 22일에는 적용기간에 대한 일물규정을 삭제하였으며,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 명칭을 개정하면서 한시적 감면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이후 1개년도 라도 동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동법 적용이 배제된 년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 적용 대상 업종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질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한시적인 법 규정은 폐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운용상의 문제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지속적인 추가 문제와 조세지원의 공평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지속적인 추가 문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지속적인 추가 문제에서는 중소기업 적용 업종의 추가 문제와 지식기반산업 적용 업종의 확대문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중소기업 적용 업종의 추가 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정 당시 제조업에 대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본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1992년 당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992년 법 규정 신설이후 아래 <표 4>와 같이 해당 업종이 계속적으로 추가되었다.

〈표 4〉 중소기업 적용 업종 추가 변동 내용

추가 연월일	추가 업종
1994.12.22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추가
1995.12.29	부가통신업 등 5개업 추가
2000.12.29	광업등 9개업 추가
2001.12.29	종자 및 묘목 생산업 등 2개업 추가
2002.12.11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9개업 추가
2005.12.31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7개업 추가
2008.12.26	출판업 추가
2010. 1. 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3개업 추가
2010. 2.1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3개업 추가
2010.12.27	농업노동자 공급업 등 5개업 추가
2013. 1. 1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2014. 1. 1	무형재산임대업 등 7개업 추가

현재는 총 53개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면서도 특별세액감면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음식점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등 3개 업종만이 제외되어 있다. 위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1992년 1개 업종에서 2014년에는 53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은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과세당국에서 홍보를 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세액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이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감면세액에만 관심이 있을 뿐 동제도의 필요성과 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또한 본인이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동 제도에 대하여 알려주거나 개선의 필요를 설명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확장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본다.

사실 조세정책은 산업정책과 국가 목표에 맞는 세제를 운용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인 적용업종을 추가해야하는 혼란과 세무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대상에 대하여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라도 하나의 중소기업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모든 분야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제외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식기반산업 적용 업종의 확대 문제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제외한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었다. 그러나 2001.12.2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20%의 세액을 감면하였으며, 그 후 지식기반산업의 업종을 2008.2.22일 법개정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등 4개업을 추가하고, 2010.2.18일 소프트웨어에 개발 및 공급업등 3개 업종을 추가했으며, 2014.2.21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등 2개종을 추가하여 현재는 총 13개 업종이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정되어 세액감면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식기반산업이 추가될 것이다. 즉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대상은 꾸준히 증가 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지속적인 이해관계단체의 로비를 통한 노력이 치열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 사회는 어느 분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의 대상으로서 지식기반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사분야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세지원의 공평성 문제

조세지원의 공평성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적용기준 개정의 문제, 일반기업 공제 감면과의 불공평 문제, 중소기업의 타 공제 감면 내용과의 불평등 문제, 수도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불평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적용기준 개정의 문제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감면된 내용을 제조업을 기준으로 검토해보면 그 감면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법」은 종업원수, 자본금등의 생산적 요소로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 등을 삭제하였다. 즉 자산규모를 5,000억원으로 하고는 있지만 다른 조건을 없애고, 업종별로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는 중분류에 따라 1,500억, 1,000억, 800억, 600억, 400억등 매출액 기준으로만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의 제조업의 사례를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매출액기준 중소기업 판정시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2012년 매출액기준)

(단위 : 업체 수, 십 억원)

분류 기호	주요 업종	개정 전 매출액		개정 후 매출액		비 고
		사업체수	매출액	사업체수	매출액	
C11	음료제조업	248	2,754	216	2,371	1. 매출액규모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종 업원 300인 이상 은 없음 2. 종업원수 (300인)와 매출액 (800억)이 구간에 접칠 때는 구간별 로 안분했음 3. 자본금(80억)은 단순화를 위해 제외 하였음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55	4,037	1,253	3,961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96	7,262	375	5,989	
C23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2,351	19,469	2,332	18,384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070	13,001	2,052	11,900	
C33	그 밖의 제품제조업	987	3,968	985	3,824	
계		7,307	50,493	7,213	46,431	

통계청 발표 중기청 통계자료 2012년 귀속자료(산업세세분류 및 출하액 규모별 주요지표, 10인 이상)

※ 매출액이 800억원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매출액중 800억원과 1,000억원 사이에 있는 기업의 2012년 매출액에 대해 (개정 전에는 1,000억원이 중소기업기준임) 개정된 세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현재 제조업에 있어서 중분류 산업중 주된 업종이 의복·악세서리 등에 해당하는 C14 등 6개 산업은 매출액 1,500억 이하를, 그리고 식료품제조 C10등 13개 산업은 매출액 1,000억 이하를, 그리고 음료제조업인 C11등 6개 산업은 평균 800억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개정되기 전 매출액 규모가 최고 1,000억원이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며 위 1,500억원은 1,0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중소기업의 수와 지원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반면에 매출액이 800억원에 해당하는 6개업은 그대로 800억원을 상한으로 함으로서 매출액이 이전 세법에서의 기준이었던 1,000억원 보다도 낮게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여 정한 것이다. 그 결과 즉 최소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추정컨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개정전보다 94개 업체 약 4조원의 매출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게 부여했던 기존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4.4.14일)전에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1,000억원 이하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또는 자본금 규모가 80억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이후에는 종업원수와 자본금 기준은 그

적용을 배제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되었다. 이로 인해 위에서 보이고 있는 C11, C18, C21, C23, C27, C33등 업종은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 통계자료상 1,000억원 매출규모에서는 종업원 규모로서의 300인 이상인 기업은 없었다¹⁰⁾. 이는 종업원이나 자본금 규모를 무제한으로 한다 하더라도 매출액 규모에 의해 중소기업범위가 이미 제한되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결국 매출액 규모로 단일화 함으로서 일부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규모를 1,000억원 매출에서 800억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2) 일반기업 공제 감면과의 불공평 문제

연도별 법인 규모별 감면 세액등 점유비율을 신고 법인수 기준, 신고 세액 기준, 년 평균으로 작성한 것이 아래 <표 6>, <표 7>, <표 8>이다.

<표 6> 연도별 법인규모별 감면공제세액등 점유비율 (신고 법인수 기준)

(단위 : %)

		신고 법인수	순이익 신고법인수	세부담 법인수	세액감면 공제법인수	세액감면 법인수	세액공제 법인수
2013	중소기업	81.3	95.2	86.8	96.7	99.7	78.7
	일반법인	18.7	4.8	13.2	3.3	0.3	21.3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2012	중소기업	80.8	83.5	86.5	96.7	99.7	79.3
	일반법인	19.2	16.5	13.5	3.3	0.3	20.7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2011	중소기업	80.1	82.9	85.9	96.6	99.0	81.2
	일반법인	19.9	17.1	14.1	3.4	1.0	1.8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2010	중소기업	79.7	82.8	85.7	96.6	99.1	9.0
	일반법인	20.3	17.2	14.3	3.4	0.9	21.0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2009	중소기업	79.7	83.1	85.8	96.8	99.1	80.1
	일반법인	20.3	16.9	14.2	3.2	0.9	19.9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누계	중소기업	80.4	85.8	86.2	96.7	99.3	79.6
	일반법인	19.6	14.2	13.8	3.3	0.7	20.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2014 「국세통계연보」 8-1-2, 8-3-2, 8-3-3, 국세청.

10) 자본금 80억이상은 통계자료가 없다.

〈표 7〉 연도별 법인규모별 감면공제세액등 점유비율 (신고 세액 기준)

(단위 : %)

		신고 법인수	법인당기 순이익	부담세액	감면공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2013	중소기업	81.3	23.8	18.2	23.1	60.0	16.5
	일반법인	18.7	76.2	81.8	76.9	40.0	85.5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2012	중소기업	80.8	23.2	17.8	25.1	56.7	18.7
	일반법인	19.2	76.8	82.2	74.9	43.3	81.3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2011	중소기업	80.1	92.7	17.8	25.0	46.2	19.5
	일반법인	19.9	7.3	82.2	75.0	53.8	80.5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2010	중소기업	79.7	24.0	20.3	30.1	57.7	20.9
	일반법인	20.3	76.0	79.7	69.9	42.3	79.1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2009	중소기업	79.6	23.6	19.5	30.5	59.0	19.4
	일반법인	20.4	76.4	80.5	69.5	41.0	80.6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누계	중소기업	80.4	22.8	18.6	26.4	55.7	18.8
	일반법인	19.6	77.2	81.4	73.6	44.3	8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2014 「국세통계연보」 8-1-2, 8-3-2, 8-3-3, 국세청.

〈표 8〉 법인규모별 감면공제세액등 점유비율 (5년 평균)

(단위 : %)

	세부담 법인		세액감면공제법인		세액감면법인		세액공제법인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중소기업	86.2	18.6	96.7	26.4	99.3	55.7	79.6	18.8
일반기업	13.8	81.4	3.3	73.6	0.7	44.3	20.4	81.2

주 : 수치는 2009-2013년(5년) 누계수치기준이다.

자료 : 2014 「국세통계연보」 8-1-2, 8-3-2, 8-3-3, 국세청.

<표 2>, <표 3>, <표 6>, <표 7>, <표 8>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누적액 평균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조세부담 비율을 사항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세부담액에 대한 분석

일반기업으로 세 부담 법인수는 36,166업체이고 세 부담액은 30,074십억 원이며, 이는 법인세를 부담하는 총 274,130개 법인의 13.2%와 총 법인세액 36,753십억원의 81.8%에 이르고, 중소기업은 법인수 중 86.8%가 중소기업인 반면 그 부담세액은 18.2%에 불과하다.

(나) 세액 공제 감면에 대한 분석

일반 기업은 공제 감면 등을 받는 기업이 5,691개 업체로서 총 법인세를 부담하는 일반기업 36,166개 업체의 15.7%에 이르고 공제감면 세액은 7,170십억원으로서 이는 일반기업이 부담하는 총 법인세액 30,074십억원의 23.8%에 이른다. 중소기업은 공제 감면 등을 받는 기업이 167,823개 업체로서 총 법인세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237,964 업체의 70.5%에 이르고 공제감면 세액은 2,149십억원으로서 이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총 법인세액 6,679십 억원의 32.2%에 이른다.

감면받는 중소기업 감면세액이 부담세액 대비 32.2%이기에 외견상 높은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5년 평균치의 중소기업 전체법인의 공제감면세액이 9,128십억원이며 이는 법인 전체 세액 공제감면액 33,370십억원의 27.4%에 불과한 것이기에 세액 면에서는 큰 수치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금액도 일부 중소기업중 중견기업에 가까운 업체들의 공제감면세액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면 소규모 일반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할 것이다.

위의 ‘(가)와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기업은 세 부담도 많이 하지만 부담세액의 약 23.8%를 세액공제 감면 받아 조세지원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원세액이 큰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이 많고 지원세액이 적은 감면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부담과 세액감면을 비교할 때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3) 중소기업의 타 공제 감면 내용과의 불평등 문제

또한 <표 9>에 의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타 세액감면이나 세액 공제와 비교할 때도 그 지원이 약하다. 즉, 5년치 누계치로 계산하여 검토한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총법인수의 93.9%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총감면세액의 71.0%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받는데 불과하며, 지방이전감면 등 기타사유에 의한 감면은 그 법인수가 6.1%에 불과하지만 총감면세액의 29%의 조세지원을 받는다.

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체당 5.4백만원인데 반해 기타감면은 업체당 27.3백만원¹¹⁾에 이른다. 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반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기타 감면들의 사유가 거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것이다.

11) $(4,611 - 3,475) \div (680,780 - 639,245) = 27.3$ 백만원

〈표 9〉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대 중소기업 기타 감면세액

(단위 : 개, 십억원, %)

구 분			2013-2009 5년 누계	연평균	중소기업특별감면 비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기업	법인수	a	639,245	127,849		
	세액	b	3,475	695.0		
중소기업 법인세신고	법인수	c	1,864,905	372,981	a/c	34.3
중소기업 세 부담	법인수	d	1,072,141	214,428	a/d	59.6
	세액	e	33,438	6,687.6	b/e	10.4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법인수	f	753,700	150,740	a/f	84.8
	세액	g	11,277	2,255.4	b/g	30.8
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수	h	680,780	136,156	a/h	93.9
	세액	i	4,611	978.8	b/i	71.0
중소기업 세액공제	법인수	j	151,401	30,280	a/j	422.2
	세액	k	6,384	1,276.8	b/k	54.4

자료 : 2014 「국세통계연보」 8-1-2, 8-3-2, 8-3-3, 국세청.

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다른 사유로 지원하는 세액공제와 비교할 때도 그 지원이 미미하다 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는 법인수가 세액공제 법인수의 4.222배이나 지원세액은 그 54.4%에 그치는 것이다.

(4) 수도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불평등 문제

53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주사무소 나 본점이 없는 경우에는 즉, 수도권 외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나 중기업 소기업 구분 없이 세액감면을 받는다. 그러나 53개 업종중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있으면 지식기반산업을 제외하고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소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세제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에서 차별을 하여야 하는지 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이들 기타 감면의 주요 요건도 사업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다. 즉, 지방이전의 단계부터 지원을 하고 더불어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도 그 기업에 대하여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그 건수는 많고 감면세액은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금액이다.

또한 일반기업에게 많은 지원이 되는 아래 <표 10>의 고액 세액감면과 고액 세액공제에는 수도권에 소재여부를 요건으로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없다.

〈표 10〉 2013년 기준 세액감면·세액공제의 내용

구 분	내 용	건 수	세 액
세액감면	해외자원개발 투자배당감면(조특법 제22조)	6건 ^{주)}	21십억원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조특법 제121조의2 제①항 제1호)	54건	109십억원
	외국인 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조특법 제121조의2 제①항 제2호 또는 제2호의5)	22건	41십억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 제121조4)	18건	197십억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1,267건	2,488십억원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326건	931십억원

주) 2013년 기준 건수가 공개되지 않아 2012년 통계 수치를 제시하였다.

V.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당초 취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리고 그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발전 시켜왔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업종 지정여부 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선정여부 (예 : 지식기반산업 등)등은 제도를 운영하는 각 기관 간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적용범위의 기준과 관련하여서 중소기업청이나 국세청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에서 중소기업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없고, 또한 분석내용이 부처마다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른 자료만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국가적으로 진정 중소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정 대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수시로 조정하면서 대상 업종들의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이익단체로부터 꾸준한 로비가 있었음을 업종의 변천사를 보아 추정해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한 업종 간에 불평등함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1. 제도상의 개선방안

가. 법조문 제목의 명확화

관련 법조문의 제목을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

면 동 규정이 마치 모든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납세자들과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혹은 요건을 다시 정하여 세액공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 적용의 일몰 적용

정부는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이후 1개년도 라도 동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동법 적용이 배제된 년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 적용 대상 업종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질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한시적인 법 규정은 폐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운용상의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 개념의 정립과 지식기반산업 적용 업종의 확대

중소기업 개념의 정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1992년 1개 업종에서 2014년에는 53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은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확장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최소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라도 하나의 중소기업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모든 분야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제외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사업 적용 업종의 확대에서는 2014.2.21일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등 2개종을 추가하여 현재는 총 13개 업종이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정되어 세액감면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 사회는 어느 분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의 대상으로서 지식기반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사분야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중소기업의 적용기준 확대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개정된 「중소기업법」을 준용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업종에 구별 없이 매출액규모 1,0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으므로 예전처럼 종업원 수, 자본금규모 등은 그 제한을 없애되 매출액 규모도 업종구분 없이 예전

과 같이 1,000억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선택으로 종업원 수나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해 규모를 현실에 맞게 제한하고 매출액 규모를 넓이는 것이 중소기업의 더욱 글로벌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감면제도의 단순화

(1) 일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형평성 유지

<표 6>, <표 7>의 2013년 실적에 따르면 일반법인 조세부담은 법인수 13.2%가 총법인세의 81.8%를 부담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법인수 86.8%가 총법인세의 18.2%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기업의 공제감면비율을 부담세액과 비교해 보면 일반기업은 23.8%의 조세지원을 받고 있고 중소기업은 32.2%의 조세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고 법인수 비율, 순이익발생 법인수 비율, 법인세부담 법인수 비율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대기업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편중될 기본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금의 유동성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제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금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보다 더 많은 조세지원을 하여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업종간 불평등을 보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당초 취지는 제조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조세정책은 산업정책과 국가 목표에 맞는 세제를 운용하는 것이지만, 그 동안 적용업종을 지속적으로 추가해야하는 혼란과 세무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하여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단 모든 업종을 감면적용 대상으로 하고 특정 업종을 제외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업종간의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좀 더 알기 쉬운 세무행정과 납세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간에 상호 유기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하여 선도할 기관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되 조세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적용범위의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청이나 국세청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중소기업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그 분석내용 역시 부처마다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른 자료만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경감세율제도의 도입

<표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대 중소기업 기타 감면세액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중소기업 총 부담세액의 약 10.4%에 이른다. 그리고 기타 감면세액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감면세액이 연평균 9,788억원인 바 이는 중소기업의 총 부담세액 연평균 6조6천8백7십6억원에 대비하여 계산한 바 14.6%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법인수가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법인수의 70.5%이며, 중소기업 총 부담세액의 32.2%이다. 이는 감면받는 중소기업 감면세액이 부담세액 대비 32.2%이기에 외견상 높은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전체법인의 공제감면세액이 법인 전체세액 공제감면액의 27.4%에 불과한 것이기에 세액 면에서는 큰 수치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금액도 일부 중소기업중 중견기업에 가까운 업체들의 공제감면세액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면 소규모 일반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안별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거나, 일반기업에서 규정한 감면제도를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일반기업에 없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일반 경감세율 적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으로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및 중국 등을 들 수 있다.

마. 감면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적용 대상기업은 많으나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또한 그 세액도 미미하여 중소기업들이 주요 적용대상이나 동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공제세액이 크며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중에서도 규모가 큰 기업이 주로 지원받고 있어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감면제도를 단순화하여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본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요약표

문제점	개선방안
1. 제도상의 문제점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문 제도의 적정성 문제 나. 법적용의 일몰성 문제	1. 제도상의 개선방안 가. 법조문 제도의 명확화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혹은 요건을 다시 정하여 세액공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 적용의 일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질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한시적인 법 규정은 폐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운용상의 문제점 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지속적인 추가 문제 1) 중소기업 적용 업종의 추가 문제 2) 지식기반산업 적용 업종의 확대 문제	2. 운용상의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 개념의 정립과 지식기반산업 적용 업종의 확대 1) 최소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라도 하나의 중소기업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리고 현재와 같이 중시분야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세지원의 공평성 문제 1)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적용기준 개정의 문제 2) 일반기업 공제 감면과의 불공평 문제 3) 중소기업의 타 공제 감면 내용과의 불평등 문제 4) 수도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불평등 문제	나. 중소기업의 적용기준 확대 —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개정된 『중소기업법』을 준용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업종에 구별 없이 매출액규모 1,0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종업원 수, 자본금규모 등은 그 제한을 없애고 매출액 규모도 업종구분 없이 예전과 같이 1,000억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점	개선방안
	다. 감면제도의 단순화 1) 일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형평성 유지 -자금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보다 더 많은 조세 지원을 하여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업종간 불평등을 보완 -일단 모든 업종을 감면적용 대상으로 하고 특정 업종을 제외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중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간에 상호 유기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하여 선도할 기관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되 조세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경감세율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안별로 세액공제체도로 전환하거나, 일반기업에서 규정한 감면제도를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일반기업에 없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일반 경감세를 적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감면제도를 세액공제체도로 전환 -감면제도를 단순화하여 세액공제체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중심으로 동 제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연구를 하였다. 특히 운영상의 문제점은 국내 처음으로 연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현황, 세액감면 현황, 세액공제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이 중소기업 전체가 부담하는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소기업의 다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의 현황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상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법조문 제목의 명확화 문제의 개선방안은 관련 법조문의 제목을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동 규정이 마치 모든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혹은 요건을 다시 정하여 세액공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법 적용의 일몰 적용 문제의 개선방안은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이후 1개년도라도 동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동법 적용이 배제된 년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 적용 대상 업종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질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한시적인 법 규정은 폐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운영상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중소기업 개념의 정립과 지식기반산업 적용 업종의 확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1992년 1개 업종에서 2014년에는 53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은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따라서 최소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라도 하나의 중소기업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모든 분야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제외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식기반산업 업종의 확대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지난 2014.2.21일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등 2개종을 추가하여 현재는 총 13개 업종이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정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 사회는 어느 분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의 대상으로서 지식기반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사분야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적용기준 확대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개정된 「중소기업법」을 준용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업종에 구별 없이 매출액규모 1,0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종업원 수, 자본금규모 등은 그 제한을 없애되 매출액 규모도 업종구분 없이 예전과 같이 1,000억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선책으로 종업원 수나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해 규

모를 현실에 맞게 제한하고 매출액 규모를 넓이는 것이 중소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면제도의 단순화 개선방안으로 먼저 일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형평성 유지는 2013년 실적에 따르면 일반법인 조세부담은 법인수 13.2%가 총법인세의 81.8%를 부담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법인수 86.8%가 총법인세의 18.2%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법인수 비율, 순이익발생 법인수 비율, 법인세부담 법인수 비율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대기업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편중될 기본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금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보다 더 많은 조세지원을 하여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음, 업종간 불평등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으로는 일단 모든 업종을 감면적용 대상으로 하고 특정 업종을 제외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업종간의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좀 더 알기 쉬운 세무행정과 납세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개선방안으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간에 상호 유기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하여 선도할 기관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되 조세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경감세율제도의 도입의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안별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거나, 일반기업에서 규정한 감면제도를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일반기업에 없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일반 경감세율 적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감면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의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적용대상기업은 많으나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또한 그 세액도 미미하여 중소기업들이 주요 적용대상이나 동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감면제도를 단순화하여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제도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특히 운영상의 문제점은 국내 처음으로 연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운영상의 문제점 중 조세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적용기준 개정의 문제, 일반기업 공제 감면과의 불공평 문제, 중소기업의 타 공제 감면 내용과의 불평등 문제, 수도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불평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필자는 본 연구에 이어서 앞으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의 개별적인 평가와 분석 그리고 통계적인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
- 권선주. 2011. “한국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정책효과와 경제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 485-512.
- 김이배 · 김재준. 2008.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9권 1호 : 45-62.
- 김철교 · 곡선호 · 강길원. 2011. 중소기업창업론. 탐북스.
- 나희수. 201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은서. 2013. 취약계층의 기업 창업 및 운영시 조세감면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우현. 2009.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석무. 200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제13권 제1호 : 151-176.
- 이향구. 2007. 연구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선호도 분석.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근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 최미희 · 최종국. 201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 조세공평의 관점”. 세무학연구 제29권 4호 : 285-316.

Problems of SME Special Tax Reduction System and Solutions - On the Issue of Equity -

Jung-woo Suh*

— <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f SME Special Tax Reduction System, one of tax support measures. Problems, both in the system itself and in its operation, are researched along with solutions in order to seek ways to improve it. It is thought that this is the first research in Korea which studies operational issues.

Corporate taxation on standard firms and SMEs, tax reduction and tax deduction are studied in tandem.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total corporate tax paid by all SMEs which is offset by SME Special Tax Reduction has been analysed in comparison to other tax reductions and tax deductions for SMEs.

In particular, of operational issues, the question of equity in tax support has been studies has been framed into the following issues : amendment of application standards for SME und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 unfairness in comparison to reduction and deduction for non-SMEs ; disparity with regards to other reduction and deduction measures for SMEs ; and inequity for SMEs in the capital. For each issue, solutions are proposed.

The author wishes that the current line of research will continue to bring about individual assessment, analysis and statistical research on tax support systems und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This paper will be analyze a study of SME Special Tax Reduction System, and also in its pursuit of fairness presents improvement plan.

<Key words> Special Tax Reduction of SME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Tax Support System

* Ph.D. in Economics, School of Finance, Renmin University of China, justinxu0420@hotmail.com